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원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166 발의연월일: 2025. 4. 28.

발 의 자:이원택・윤준병・송옥주

문금주 · 서삼석 · 이병진

어기구 · 문대림 · 임미애

임호선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또한 훨씬 강해지고 있으며, 이에 따른 농작물 침수 및 가축 폐사 등 농가·어가의 피해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있음.

그러나 이러한 재해로부터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, 재해 발생 시 사후대책 마련과 농가·어가의 경영안정, 생산력향상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은 농가·어가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주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. 또한, 현행법 상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형 산불이 빠져 있어 최근 경북·경남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농어업 생산물 및 시설 등에 대한 보상에 한계가 있음.

이에 농어업재해대책이 농가·어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대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·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, 재해에 「산림보호법」 상 대형 산불을 포함시켜 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되, 이상고온 현상과 현행법에 따른 '이상저온·일조량 부족' 등은 기상특보가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재해대책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함(안 제2조제2호).
- 나.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2조의2 신설).
- 다.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기후영향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보장 및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, 농어업재해보험의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(안제3조제1항).
- 라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을 수립·시행함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3조제2항신설).
- 마.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 피해의

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의2 신설).

- 바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보조하고, 타 법에 따른 복구 및 지원금, 보험 금이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도록 함 (안 제4조제1항).
- 사.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4조제7항).
- 아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 재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(안 제4조제8항 신설).
- 자.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,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인, 어업인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(안 제5조).
- 차.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, 기후변화가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을 심의하도록 함(안 제5조의2 신설).
- 카.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 농가·어가의 경영안정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하여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

도록 함(안 제9조의2 신설).

타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함(안 제9조의3 신설).
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"해일, 태풍, 강풍, 이상저온(異常低溫)"을 "지진, 해일, 태풍, 강풍"으로, "(病害蟲), 일조량(日照量) 부족"을 "(病害蟲)"으로, "말한다)"를 "말한다), 대형 산불(「산림보호법」 제37조의 대형 산불을 말한다. 이하 같다)"로, "제5조제1항"을 "이상고온(異常高溫), 이상저온(異常低溫), 일조량(日照量) 부족 등 제5조제1항"으로 하고, 같은조 제3호 중 "(異常水溫)"을 "(異常水溫), 대형 산불"로, "제5조제2항"을 "제5조제1항"으로 하며, 같은조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4. "농어업재해보험"이란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을 말한다.
- 15. "보험목적물"이란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말한다.
-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2조의2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고 농가·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어

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(이 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재해대책의 목표
- 2.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- 3.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4.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
- 5. 상습침수구역 대책 등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
- 6. 재해대책을 통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7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기본계획에 따라 재해대책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 시행하여야 한다.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9조의2에 따른 통계자료를 반영하여야 한다.
-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

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3조(재해대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47조의2에 따른 기후영향평 가등을 활용할 수 있다.
 - 1.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·기자재 또는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
 - 2. 재해 발생 시의 농업용 시설, 농경지, 농작물 등의 복구 및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보장에 관한 사항
 - 3. 재해 발생 시의 어업용 시설, 어장, 수산양식물 등의 복구 및 재 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보장에 관한 사항
 - 4.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
 - 5.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
 - 6.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
 - 7. 친환경 농작물에 대한 병충해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- 8.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의 지원에 관한

사항

- 9. 그 밖에 재해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재해대책을 수립·시행함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3조의2(재해발생 긴급 실태조사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 산부장관은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③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"재해대책에 드는"을 "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"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제외하되,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"을 "제외하되, 복구 및 지원 금액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그 밖의법령에 따른 복구비 및 지원금 또는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"으로 하며,

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"비료대금"을 "비료대금 등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기준을 정하여야 한다.

-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는 재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피해보상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5조의 제목 "(심의위원회)"를 "(농업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농업재해에"를 "농어업재해대책에"로, "사항을 심의하게 하기"를 "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"로, "심의위원회를 둔다"를 "심의위원회를,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"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1. 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 - 2. 제3조에 따른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

- 3. 제4조에 따른 재해대책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4. 다른 법률에서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사항
- 5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- ④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2.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대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
- 3. 자연재해 또는 재해대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·행정 안전부·환경부·국토교통부·농촌진흥청·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

- 4. 농업협동조합중앙회·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원 중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사람
- 5. 농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- 6. 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
- ⑤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 고 인정하는 사람
- 2. 해양수산부의 재해대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공무원
- 3. 자연재해 또는 재해대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·행정 안전부·환경부·국토교통부·해양경찰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
- 4.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 임원 중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사람
- 5. 어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- 6. 어업인단체의 대표
- ⑥ 제4항제1호·제5호 및 제5항제1호·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

으로 한다.

- ⑦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인, 어업인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⑧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·조정하고,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⑨ 그 밖에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하고,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5조의2(심의위원회의 기능)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제3조에 따른 재해대책 및 제4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
 - 2. 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 및 의연금(義捐金)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
 - 3. 재해로 인한 피해의 조사
 - 4. 군장비 및 병력의 지원 필요성 여부
 - 5. 기후변화가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
- 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의3(종전의 제5조의2) 중 "제5조제1항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와 같은 조 제2항의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"를 "심의위원회의"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"자에게"를 "자(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한 주민을 포함한다)에게"로 한다.

제7조의2제1항 중 "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 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가"를 "시·도지사가"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"자에게"를 "자(제1항에 따른 지원 요구를 받아 지원한 자를 포함한다)에게"로 한다.

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통계의 수집·관리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재해 피해 농가·어가의 경영안정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통계자료를 수집·관리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를 요청할 수 있다.

- 1. 재해별 피해 원인 및 피해 발생 지역, 피해 규모에 관한 자료
- 2. 재해별 보상 규모 및 복구에 관한 자료
- 3. 농어업재해보험에서 제외된 보험목적물 피해에 관한 자료
- 4. 친환경 농작물의 병충해 피해에 관한 자료
- 5. 상습침수구역에 관한 자료
- 6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자료
-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가·어가의 경영안 정 및 생산비 보장을 위하여 재해대책 제도 및 보조·지원 등을 위 한 조사·연구,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진흥 시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수집·관리, 조사·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9조의3(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려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농업재해"란 가뭄, 홍수, 호	2
우(豪雨), <u>해일, 태풍, 강풍, 이</u>	<u>지진, 해일, 태풍, 강풍</u>
<u>상저온(異常低溫)</u> , 우박, 서리,	
조수(潮水), 대설(大雪), 한파	
(寒波), 폭염(暴炎), 황사(黃	
砂)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	
해충(病害蟲), 일조량(日照量)	(病害蟲)
<u>부족</u> , 유해야생동물(「야생생	
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	
률」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	
동물을 <u>말한다)</u> , 그 밖에 <u>제5</u>	- 말한다), 대형 산불(「산림
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	보호법」 제37조의 대형 산불
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	<u>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이</u>
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	상고온(異常高溫), 이상저온
업용 시설, 농경지, 농작물, 가	(異常低溫), 일조량(日照量) 부
축,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	<u>족 등 제5조제1항</u>
의 피해를 말한다.	
3. "어업재해"란 이상조류(異常	3
潮流), 적조현상(赤潮現象), 해	
파리의 대량발생, 태풍, 해일,	

이상수온(異常水溫),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 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.

4. ~ 13. (생 략) <신 설>

<u><신 설></u>

<u><</u>신 설>

<u>(異常水溫)</u> , 대형 산불-
<u>제5조제1항</u>

4. ~ 13. (현행과 같음)

14. "농어업재해보험"이란 「농 어업재해보험법」 제2조제2호 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을 말 한다.

15. "보험목적물"이란 「농어업 재해보험법」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말한다.

제2조의2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고 농가·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재해대책기본계획(이하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

-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재해대책의 목표
- 2.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- 3.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

 된 비용 보장 및 지원에 관한

 사항
- 4.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
- 5. 상습침수구역 대책 등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개선에 관한 사항
- 6. 재해대책을 통한 농어가의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7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 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 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는 기본계획에 따라 재해대책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 야 한다.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

제3조(재해대책)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한다. 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하는 경우 제9조의2에 따른 통 계자료를 반영하여야 한다.

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련 기관・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한다.

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

 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

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조(재해대책) ① 국가와 지방
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대책 기
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
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
해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이
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
예방하기 위하여 「농업・농촌
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47조
의2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

- 3. 재해 발생 시의 어업용 시 설, 어장, 수산양식물 등의 복 구에 관한 사항
- 4.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

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재해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

활용할 수 있다.

- 3. 재해 발생 시의 어업용 시설, 어장, 수산양식물 등의 복구 및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생산비용 보장에 관한 사항
- 4.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의

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

 사항
- 5.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
- 6.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
- 7. 친환경 농작물에 대한 병충해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사항
- 8.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 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의 지원 에 관한 사항
- 9. 그 밖에 재해대책의 시행에

<신 설>

관한 사항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의 재해대책을 수립·시행함 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 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3조의2(재해발생 긴급 실태조사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해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를 실시할수 있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

제4조(보조 및 지원) ① 국가와 기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 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 다. 다만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, 피해 의 경감,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 에서 제외하되,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「농어업재해보험 험법」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 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 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

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
농림축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
부령으로 정한다.
제4조(보조 및 지원) ①
<u>재해 이전까지</u>
<u>생산에 투입된</u>
제외하되, 복구 및 지원 금
액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
법」,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
에 관한 법률」, 그 밖의 법령
에 따른 복구비 및 지원금 또
<u>는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</u>
②

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- 1. 2. (생략)
- 3.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: 종묘대금 및 <u>비료</u> 대금

4. ~ 10. (생략)
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 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 음 각 호에 따른다.
- 1.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 의 피해가 있는 경우 가.·나.(생 략)

<신 설>

- 2. ~ 4. (생 략)
- ④ ~ ⑥ (생 략)
-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을 준용하되, 같은 법 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 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

<u>.</u>
1.·2. (현행과 같음)
3
<u>月</u>
료대금 등 재해 이전까지 투
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
일부
4. ~ 10. (현행과 같음)
③
1
가.・나. (현행과 같음)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<u>다.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</u>
다.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
다.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 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
다.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 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. ~ 4. (현행과 같음)
 다.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 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. ~ 4. (현행과 같음) ④ ~ ⑥ (현행과 같음)
 다.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 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. ~ 4. (현행과 같음) ④ ~ ⑥ (현행과 같음)
 다.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 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. ~ 4. (현행과 같음) ④ ~ ⑥ (현행과 같음)
 다.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 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. ~ 4. (현행과 같음) ④ ~ ⑥ (현행과 같음)
 다.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 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. ~ 4. (현행과 같음) 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(이 하 "공동부령"이라 한다)으로 정한다. <후단 신설>

<신 <u>설></u>

⑧ (생략)

제5조(심의위원회) ① <u>농업재해에</u> 관한 <u>사항을 심의하게 하기</u> 위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 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둔다.

<신 설>

<신 설>

-----. <u>이 경우 국가 및 지방</u> <u>자치단체는 실거래가 수준으로</u> 지원기준을 정하여야 한다.

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 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는 재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피해 보상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⑨ (현행 제8항과 같음)

제5조(농업 및 어업재해대책 심 의위원회) ① <u>농어업재해대책</u> 에------<u>다음 각 호의 사항을</u> 심의하기-----

 ------심의위

 원회를,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

 대책 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.

- 1. 제2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- 2. 제3조에 따른 재해대책에 관 한 사항

<신 설>

<신 _설>

<신 설>

- ② 어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 부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를 둔다.
-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조 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- 3. 제4조에 따른 재해대책 보조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4. 다른 법률에서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재해대 책 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
- 5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 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각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해 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, 부위원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 다.
- ④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 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

어야 한다.

- 1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 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2.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대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
- 3. 자연재해 또는 재해대책 관 런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 부・행정안전부・환경부・국 토교통부・농촌진흥청・산림 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
- 4. 농업협동조합중앙회·산림조 합중앙회 소속 임원 중 중앙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
- 5. 농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- 6. 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
- ⑤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 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 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

<u><신 설></u>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재해 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2. 해양수산부의 재해대책을 담 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
- 3. 자연재해 또는 재해대책 관 런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 부・행정안전부・환경부・국 토교통부・해양경찰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
- 4.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임원 중 중앙회장이 추천하는사람
- 5. 어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 이 위촉하는 사람
- 6. 어업인단체의 대표
- ⑥ 제4항제1호·제5호 및 제5항제1호·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⑦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-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농업인, 어업인 및 관 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 야 한다.
- 8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·조정하고, 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⑨ 그 밖에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조의2(심의위원회의 기능) 심 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한다.
 - 1. 제3조에 따른 재해대책 및

 제4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와

 지원에 관한 사항
 - 2. 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 및의연금(義捐金) 등의 사용에관한 사항
 - 3. 재해로 인한 피해의 조사
 - 4. 군장비 및 병력의 지원 필요 성 여부
 - 5. 기후변화가 농어업에 미치는

제5조의2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제5조제1항의 농업재해 대책 심의위원회와 같은 조 제 2항의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 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 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 로 본다.

제7조(응급조치) ①·② (생 략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 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 을 하여야 한다.

④·⑤ (생략)

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) ① 「폐기물관리법」에도 불구하

영향 및 대책	
6. 그 밖에 위원장이	필요하다
고 인정하여 회의	에 부치는
<u>사항</u>	
제5조의3(벌칙 적용에/	서 공무원
의제) 심의위원회의-	
제7조(응급조치) ①・②	2) (현행과

제7조(응급조치)	1.2	(현행과
같음)		

③				
	·- <u>자(제1</u>	항에 1	따라	응급
조치에	종사한	주민-	을 포	함한
<u>다)에게</u>				
	·			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7조의2(죽은 동물의 처리 및 제7조의2(죽은 동물의 처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) ① -- 고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이 나 수산동물(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을 말한다)의 사체(死體)가 발생하여 해당 특별시장 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 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물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8조(응급대책의 지원) ①·② 지 (생 략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<u>자에게</u>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

④ (생 략) <신 설>

<u>시</u> ·도지사가
<u>.</u>
② (현행과 같음)
세8조(응급대책의 지원) ①·②
(현행과 같음)
(237 年日)
(a)
기/키1청시 메 근 기
<u>자(제1항에 따른 지</u>
원 요구를 받아 지원한 자를
<u> 포함한다)에게</u>
④ (현행과 같음)
제9조의2(통계의 수집·관리 등)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

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 농가

- ·어가의 경영안정 및 재해대 책 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통계자료를 수집·관리하여 야 하며, 이를 위하여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를 요청할 수 있다.
- 1. 재해별 피해 원인 및 피해 발생 지역, 피해 규모에 관한 자료
- 2. 재해별 보상 규모 및 복구에 관한 자료
- 3. 농어업재해보험에서 제외된 보험목적물 피해에 관한 자료
- 4. 친환경 농작물의 병충해 피해에 관한 자료
- 5. 상습침수구역에 관한 자료
- 6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자료
-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 라야 한다.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

<신 설>

양수산부장관은 농가·어가의 경영안정 및 생산비 보장을 위 하여 재해대책 제도 및 보조· 지원 등을 위한 조사·연구, 관 런 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진흥 시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.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수집·관리,조사·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의3(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 법을 알려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